

# 가스普及의 現況과 推進方向

高廷植

(動資部 資源政策室 · 化工技佐)

## I. 序

하나의 社會시스템이 必要로 하는 에너지의 總量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질 수 있다.

$$E = P \times A \times T$$

E : 에너지總所要量

P : population Factor (人)

A : Affluence Factor (財貨 및 用役消費量/人)

T : Technology Factor (投入에너지/單位財貨 및 用役)

즉 總人口数와 1人当 消費하는 財貨 및 用役의 量, 財貨 및 用役 1单位 生産에 所要되는 必須에너지量과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어 한 社會가 必要로 하는 에너지의 量과 種類는 이들 3因子에 依하여 變化하게 된다.

에너지의 總量은 시스템內의 總人口의 增加와 物質的 富의 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增加하게 되며, 技術의 進歩에 따라 所要에너지原單位가 낮아지므로 總所要에너지は 減少하게 된다. 消費되는 에너지의 種類는 社會시스템內構成員間의 所得階層別 分布, 에너지源間의 相對價格構造, 에너지使用設備間의 効率 및 經濟性等에 의하여 變化하게 된다.

한편 에너지의 供給側面을 檢討하여 보면, 賦存에너지資源의 貧弱으로 에너지의 對外依存度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立場에서는 輸入에너지源의 最適化로 에너지供給시스템의 安定性을 提高하여야 함은 自明한 이치라 하겠다.

## II. 가스普及 확대의 必要性

우리 나라의 1次에 너지 消費構造는 中東產 輸入

石油에의 依存度가 매우 높아 對外的인 脆弱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 4 차 中東戰 및 이란革命에 依한 1·2次 石油危機의 發生은 우리들에게 이를 確認시켜 주는 좋은契機가 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에너지供給시스템의 安定性 提高를 為해 石油依存度의 減縮과 原油導入先의 多邊化를 積極的으로 推進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政策의 一環으로 原油보다 比較的 넓게 分布되어 있으며, 可採年數가 길고 20年以上的 長期供給契約으로 安定的 確保가 可能한 LNG (Liquefied Natural Gas) 的 導入을 推進中에 있으며, 아울러 LNG 供給契約의 硬直性과 初期投資가 莫大한 点등을 補完하고, 大量需要의 創出이 必要한 LNG事業의 導入基盤을 構築하기 為해, LNG에 比해 需要·供給의 弹力性이 相對的으로 크며, 初期投資費用이 低廉한 LPG (液化石油ガス)의 導入을 推進하고 있다.

한편 對內的인 에너지의 消費側面에서 본다면, 그간 持続的인 人口增加와 經濟規模의 膨脹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消費는 年平均 8%以上 ('61年 9,747천 TOE에서 '81年 推定 45,829천 TOE)의 높은 水準의 增加를 보였으며, 에너지源別 消費構造도 新炭과 石炭中心에서 石油를 主種에 너지源으로 變化되어 왔다. 그러나 民生用에너지部門에 있어서는 石炭이 여전히 主種에 너지源의 위치를 固守하고 있으며, 特히 都市家庭燃料에 있어서는 70%以上的 거의 絶對的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国内石炭은 現在 炭幅이 협소하고 불규칙하여 鉱경사를 이루고 있어 生產여건이 계속 悪化되고 있으며, 採部採炭에 따른 탄질의 저하로 生產한계점에 到達해 있어 5次 5個年計劃期間中

生産增加率은 年 2.5%에 머무를 展望이나, 消費增加率은 年 2.8% 以上에 達할 것으로 展望되어 無煙炭需給의 不均衡이 予想되고 있다. 한편 연탄을 都市家庭燃料로 使用함에 따라 SO<sub>x</sub> 等의 배출로 인한 大氣污染, 재의 처리에 따른 住居環境污染等 심각한 公害問題를 蒼起하고 있어 이의 解決 또한 家庭用에 너지의 確保라는 需給側面 못지 않게 重要한 問題로 台頭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政府는 福祉社會의 建設을 위한 民族的 課業을 수행하기 위한 施策의 一環으로서, 他燃料에 比하여 公害物質의 排出이 全然 없으며 使用後 재의 처리 問題等을 일으키지 않고, 使用이 간편하여 热效率이 높은點 等의 長점을 가지고 있는 가스를 국민들의 생활연료로 拡大普及하여 決適한 生活環境을 造成하기로 決定하고(제 25차 경제장관협의회 : 가스導入에 関한 基本方針議決) 이를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한편 산업용에너지에 있어서도 유리, 요업, 철강등 표면처리가 필요한 업종에 있어서 Sulphur에 의한 Corrosion 문제등을 해결함으로써 이들 업종의 연료를 가스화하여 품질과 가격의 國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도 간파되어서는 아니되겠다.

### III. 가스普及現況 및 問題点

現在 우리나라의 總에 너지費用中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 程度의 미미한 實情이며, 家庭部門의 用途 또한 炭事用에 限定되어 있어 暖房用等의 大量需要의 開発이 아쉬운 實情이다. 한편普及型態別로는 都市가스가 全國에 15万세대, 집단시설에 의한 供給가구가 6万세대, 容器使用 세대가 57万세대로서 총가스 普及세 대수는 78万세대로서 (81年末 現在) 普及率은 10% 程度에 不過하다. 이처럼 가스의 普及이 부진한 것은 원천적으로 國內가스価格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음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國내가스価格의 高価策定은 燈油와 軽油等의 낮은 가격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価格의 인하는 타유종의 가격에 전가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가스普及拡大만을 為하여 급격한 가격인하를 단행함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연소기기도 취사용 위주로 되어 있어 온수용, 난방용수요의 개발이 자연되고 있으며, 都市가스의 보급도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성 결여와 시설부담금 등의 장기저리 할부상환제도등 지원시책이 충분하지 못하여 활발하지 못한 實情이다. 參考로 日本의 가스事業者 및 消費者에 对한 支援施策을 一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LPG 価格比較

	가격 (\$ / MT)			열량당가격 (\$ / MMBM)		
	F O B	C I F	국내고시가	F O B	C I F	국내고시가
프로판	225.0	266.31	948.55	4.73	5.59	19.92
부탄	225.0	296.46	945.85	5.45	6.33	20.20

註: 81年末 사우디공사가 기준, 환율 710:1

<表 2> 연료가격대비

(단위: ₩/1,000Kcal)

연 탄	경 유	L P G	도시가스	중 유
11.1	30.2	36.25	49.3	20.14

註: 도시가스는 11~25M<sup>3</sup> 사용基準価임.

### IV. 向後 가스普及 전망 및 諸支援施策

政府는 제 5 次經濟開発五個年計劃 期間中 가스의普及拡大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都市가정 연료의 가스化를 達成할 계획이며, 특히 88年度의 서울올림픽개최를 앞두고 폐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國제도시로서의 서울의 면모를 일신할 것이다.

普及型態別로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京仁圈의 大都市는 LNG를 中心으로 한 都市가스供給을 推進하고, 其他 地域의 大都市는 LPG를 原料로 한 都市가스, 中小都市에 있어서는 集團供給施策에 의한 LPG공급과 農村等의 其他地域은 LPG 容器에 의한 供給体制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以上의 目標를 達成하기 為해 첫째 가격의 단계적 引下를 통한 수요확대기반의 구축을 도모할 것이다. 가정용에 있어서는 國내석탄산업의 特수성을 감안, 有効熱量, 使用便益等을 종합적으로

## □ 特別企劃 : LPG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철강, 유통, 유리제품등의 산업용은 대체 유종인 較油, 檬油 수준으로 인하하여 이를 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金融 및 税制面에 있어서도 諸支援施策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LNG 도입 시기에 맞추어 적정 도시가스수용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일시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요

〈표 3〉 日本의 가스냉난방 촉진지원

금 용	세 제	행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은행조특리융자     융자비 : 50%     이 자 : 5 ~ 6 %/年</li> <li>○ 중소기업금융공고     이 자 : 8 %/年     융자비 : 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세액공제 (특별상각)         3년간 7%세액공제 혹은 30% 특별상각 선택 적용</li> <li>○ 고정자산세 경감         취득후 3년간 과세 표준을 2/3로 경감</li> <li>○ 가스세 비과세         가스세 2% 경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냉난방부하 조정계약에 의한 요금할인 : 약 30%</li> <li>○ 전력제절별요금제도 채택         7 ~ 9월 10% up</li> <li>○ 건설성 공통사양서 개정</li> <li>○ 소형가스냉난방기 기술 개발보조         민간개발비의 2/3 혹은 1/2 보조</li> </ul>

〈표 4〉 日本의 금융 · 세제상 지원제도

항 목	대 상	내 용
금 용	일본개발은행융자 (일본개발은행법 18조)	측정가스도관 및 설비
	중소기업융자 공고	공급압력 개선, 운전자금 및 기타 설비
	지방 공공단체	공사비 일부부담
	기채, 정부자금, 공영공고	제조 및 공급설비
세 제	고정자산세 (지방세법 349조 33항)	상각 자산
	특별상각 (조세 특별조치법 43조 항)	특별 도관
	사업소세 (지방세법 707조 34항)	가스용 시설
	준비금 제도 (조세 특별조치법 53조 4 항)	특정 도관
	특별토지소유세 (지방세법 586조 2 항)	가스용 시설
	관세 환급 (관세 감정조치법)	LPG 및 석탄 나프타
	시험연구비 (조세 특별조치법 421조 6 항)	무세 620¥/kℓ 관세 환급
		법인세액 공제
행 정	5개년계획지도	1차 : 도시가스 시설확충 (1949~1950) 2차 : 도시가스 보급 (1955~1960) 3차 : 도시가스 공급확대 (1961~1966) 4차 : 도시가스 사업 신 5개년계획 (1967~1972)

자에 대한 장기저리 할부상환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음은 5차 5개년계획 기간중 都市ガス 보급세 대수를 기준으로 세대당 30万원 씩의 장기저리 용자(연리 6%, 60개월 할부상환) 時에 필요한 자금소요를試算해 본 것이다.

燃燒器國產化研究開発을 為해서는 民間企業研究開発費의 適正水準支援, KAIST, 動力資源研究所, 業界의 研究協調体制樹立, 温水 및 冷暖房用品과 大容量 使用設備의 業体別 專門化, 燃燒性의 統一 및 염가대량공급체제구축에 의한 소비자보호等의 조치가 実施되어야 할 것이다.

稅制面에 있어서는 導入施設機材材의 関稅減免 및 分納, 特別償却의 認定등이 考慮될 수도 있을 것이며, 가스요금용량負荷制의 調整案으로서는 現在의 累進価格체제를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난방 및 온수 소요량까지 누진요율적용을 배제하고, 대수용기에 대하여는 할인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表 5〉 가스普及 확대 계획

(单位: 万家口)

区分	'81	'82	'83	'84	'85	'86
計	72	103	132	170	201	250
都市ガス	14	21	32	44	59	80
集団ガス	15	25	35	48	57	70
容器利用家口	43	57	65	78	85	100
普及率(%)	10	13	17	20	24	30

〈表 6〉 5次五個年計劃期間中所要資金

(单位: 万世帯, 億원)

	'82	'83	'84	'85	'86	計
도시가스보급세 대수 (万세대)	21	32	44	59	80	-
당해년도 증가세 대수 (万세대)	7	11	12	15	21	65
용 차 액 (億 원)	210	330	360	450	630	1,950
당해년도 상환액 (億 원)	52.95	136.15	226.92	340.38	499.22	1,255.62
연도초자금소액 (億 원)	210	277.05	223.85	223.08	289.62	1,223.6

註: 회수된 용자상환금은 연리 18%로 적립하여 차년 도초에 放出하는 것으로 함.

연도초자금소요액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都市開発時에 가스, 水道, 電氣等의 共同溝를 設置토록함으로써, 가스화에 따른 投資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가스普及拡大에 따라 漸增하는 가스事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귀중한 生命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안전관리를 포함시켜 교과서 교육을 시도하고 공급자 주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계몽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이며, 가스공작물 및 소비기기 기술상기준 특정가스 소비기기 설치공사 기준등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건축법 등 관련법규와의 연계보완을 추진하는등 시설안전관리 기준의 강화, 가스綜合保險의推進, 施工業体의 大型化유도로 부실 시공을止揚하고, 事業者의 大型化로 사고책임 감당능력提高 및 신뢰도의向上을 기하는 등 사업자 및 시공업체의 철저한 관리, 石油化学工業團地等 有資格業体의 自律検査機能拡大, 地域別 檢査物量에 따른 適正数의 民間検査代行機関育成 모색등 가스 대량 소비시대에 相応한 檢査체제의 개편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V. 結語

賦存에 너지源의 貧弱으로 海外로부터의 輸入에 너지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에너지政策의 第一課題는 어떻게 하면 最少의 費用으로 가장 安定的인 에너지源을 導入하여, 이를 効率적으로 利用함으로써 經濟的効用을 極大化하는가라는 問題라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가스의 導入·普及도 위와같은 国民經濟의 觀點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対外적으로는 導入主体의 Bargaining Power를 向上하여 外貨의 海外流出을 最少限으로 抑制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產油國으로부터의 直接導入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対内적으로는 部門別 需要의 最適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스와 他에 너지源間의 消費部門別 相對効用을 신중하게考慮하여 가스普及拡大化를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